

3-02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 규정

제정 2018. 09. 07.

일부개정 2021. 03. 04.

제1조(정의)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영문으로 National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약칭 ‘NMC’)로 하며, 국가 단위의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주관하고 세계 무예마스터십 운동을 보급하는 국가 단위별 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목적 및 역할) ①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을 준수하여 자국 내의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② 위원회는 세계반도핑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③ 위원회는 평화, 인권, 공정한 경쟁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차별, 폭력, 승부 조작 등 사회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④ 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각 국가의 무예단체를 가맹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결성 시 해당 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이하 “WMC”라 한다)가 후원하는 대륙 및 지역별 경기대회에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한다.

⑥ 위원회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IFs)이 규정하는 경기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위원회 결성 시 해당 위원회는 WMC와 협의하여 자국 내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유치신청도시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할 경우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⑧ 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나, 세계무예마스터십 현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본부 및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관할구역은 국가의 영토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정부로부터 독립적 기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관계 기관, 국가체육/스포츠위원회 관계 기관 혹은 정부체육/스포츠부 관계 기관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속 국가 내 WMC 위원이 있는 경우 WMC 위원 전원(이 경우 WMC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되어야 한다)

2. 세계무예마스터십에 가입된 종목의 모든 국내무예단체의 대표자

3.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가. 세계무예마스터십 참가 경력이 있는 선수 대표

나. 세계무예마스터십 종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WMC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연맹의 국내무예단체 대표자

다. WMC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자국 국적 보유자

④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단,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표자는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 설립 시 WMC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승인) ① 위원회가 조직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WMC에 제출하고, WMC는 위원회 설립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위원회는 자신의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하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관하여 WMC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정관에 따라 연 1회 총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하나의 무예종목에 둘 이상의 무예단체를 가맹단체로 승인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WMC 무예종목의 국가 무예단체를 3개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 소속 무예단체는 자국 내 무예단체 간 상호 분쟁 및 WMC 무예종목의 국제연맹과 분쟁이 없어야 한다.

⑥ 세계무예마스터십헌장 제19조에 따라 WMC는 위원회에 가맹단체(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참여단체)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는 세계무예마스터십헌장에 따른다.

제5조(권한) ①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당 국가 선수단을 세계무예마스터십에 파견하고, WMC와 협의하여 유치신청도시를 선정한다.

③ WMC의 승인을 통해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자산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WMC에 소속된 조직에서 활동하거나, WMC가 후원하거나 주최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제6조(의무) ① 세계무예마스터십 헌장 위배 시 WMC는 해당 위원회에 제재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제재 및 기타 조치를 따라야 한다. 단, WMC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해당 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WMC에 의해 승인된 위원회는 WMC에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WMC에 의해 제시된 시기에 WMC에 일정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구성 후 1년마다 활동보고서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09.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WMC 및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09. 1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예마스터십위원회(NMC)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일반 정보	
NMC 공식명칭	원어
	영문
대표/회장	성명 : 이름/성 직책 : 이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법적 지위	
사무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락 담당자	성명 : 이름/성 이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대폰번호 :
1. NMC의 설립 목적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NMC의 구조	

3. NMC 회원 명단 (총 ___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사진, 소속기관, 직책, 이력,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4. NMC 집행위원회 명단 (총 ___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사진, 소속기관, 직책, 이력,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5. NMC 가맹종목 및 단체
6. NMC 사무국 구조
7. 자원 및 재정 상태

WMC로부터 NMC로 승인받기 위해 작성된 본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들이 모두 사실임을 보증하며, 신청서를 WMC에 제출합니다.

지역/도시/기관 :
 주 소 :
 일 자 :
 직 책 :
 성명 & 서명/직인 :

※ 성명 & 서명은 반드시 지역/도시/기관 대표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함.